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 조세특례제한법*(§104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토록 위임

* '25.12.23일 개정, '26.1.1일 시행

- 금일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104의24⑧)

✓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방법을 따르되, 시행 첫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 (예시)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사실(배당성향·배당액 등)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핵심지표(ROE, CAPEX 등)만 본문 기재, 상세 계획은 선택 첨부

✓ 한국거래소의 두 차례 설명회(3.4일·3.9일), 1:1 공시 컨설팅*,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공시를 전폭 지원

* 특히, 3월말 주총 예정기업의 경우, 거래소에서 1:1 유선·현장 컨설팅을 통해 밀착 지원

[기대효과]

✓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연계를 통해 기업의 공시 참여 제고

- 상장기업이 주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를 착근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작년 12.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1.1일 시행)됨에 따라 주식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었다.

동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하 “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104의24⑧).

〈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주요 내용 〉

- **(내용)**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환류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 **(특성)**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 **(방법)**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첨부하여 자율공시로 제출,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를 권장하고 예고 공시도 가능
* <https://filing.krx.co.kr>
- **(이사회 책임)** 이사회에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 의무사항은 아님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기재상 유의사항 등 참고 가능

특히, 금년은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1]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 및 약식 공시 예시

또한,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3.4일, 3.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하는 한편, 3월 말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작성 내용·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전화·이메일 컨설팅 제공 (필요시 방문상담 병행)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링크 공지(2.25일) 및 1:1 컨설팅 신청 접수(2.25일~3.10일) 예정

[기대효과]

현 정부는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뢰, 주주보호, 혁신, 선순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이 되는 자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더불어, 이를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환류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되고,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2-2100-2656)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15-4230)
		담당자	사무관	전동표	(044-215-4233)
<공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책임자	부 장	조진우	(02-3774-4030)
		담당자	팀 장	최성규	(02-3774-4031)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 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 주요 내용		
3. <u>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u>	(해당 또는 미해당)	
	<u>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u>	
	<u>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u>	
	<u>직전 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원)</u>	
	<u>전전 사업연도(2024) 이익배당금액(원)</u>	
	<u>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u>	
4. 결정일자	__-__-__	
5. 관련 자료	계재일시	
	관련 웹페이지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관련공시	

□ (사례1) 매출, 영업이익 등에 대한 수치목표가 아닌 성장 전략과 방향성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하여 목표·계획을 수립한 사례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ABC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p><목표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자본적지출(CAPEX) 규모 유지 - 동남아 시장 등 해외 매출 확대 - 배당성향 45% 달성 - 배당절차 개선(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 <p><계획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중 본사 생산라인 증설 - '26년 4월 베트남지역 수출 개시 - 비영업자산 매각을 통한 배당재원 확보 -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하반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 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100억원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	30%
	직전 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원)	120억원
	전전 사업연도(2024) 이익배당금액(원)	100억원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20%
4. 결정일자	2026-03-18	
5. 관련자료	게재일시	2026-03-18
	관련 웹사이트	www.abc.co.kr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p>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p> <p>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3. 상기 '4.결정일자'는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자 입니다.</p>	
	※ 관련공시	-

□ (사례2) 사례1에 비해 구체적 분석에 기반한 사례로, 주요 내용을 가이드라인 권고 체계에 맞추어 충실히 기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p>※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p>		
1. 계획서 명칭	2026년 XYZ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p><기업개요> - 이차전지 사업 등 수행</p> <p><현황진단> - 지속적 설비투자로 자산 규모는 확대 추세 -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 예상 - 작년말 기준 COE 9%(CAPM 방법론 사용, 무위험이자율은 국고채 3년 기준)</p> <p><목표설정> - 2027년~2029년 연평균 매출성장률 8%, 영업이익률 20% - 2028년 PBR 1배 이상, ROE 10% 이상 - 2027년 연간 주주환원규모 1조원, TSR 20% - 2026년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80%</p> <p><계획수립> - 고효율 기술 선점을 위한 해외기업 파트너십 구축 -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저수익사업 청산 - 기업 실적과 배당을 연계하여 배당규모 확대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p> <p><이행평가> - 최초 공시에 해당하여 기재 생략</p> <p><소통> - CEO가 직접 참여하는 분기별 IR개최 - 영문 홈페이지 개설 및 영문공시 확대</p>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 당	
	<u>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u>	8천억원
	<u>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u>	45%

	<u>직전 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원)</u>	8천억원
	<u>전전 사업연도(2024) 이익배당금액(원)</u>	8천억원
	<u>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u>	-
4. 결정일자	2026-03-25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2026-03-25
	관련 웹페이지	www.xyz.co.kr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p>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p> <p>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3. 상기'4.결정일자'는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일자 입니다.</p>	
	※ 관련공시	-

1.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모든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모든 사항의 열거식 기술이 아니라, 기업이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의미가 크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하고 싶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채택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이사회에 보고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을 권고하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3.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공시 방법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작성한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자율공시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서식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시 제출과 동시에 기업의 홈페이지에도 해당 계획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에 따른 자율공시

4.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분량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공시이므로, 공시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목차 내용을 기본적인 공시항목으로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특성 및 역량에 따라서 목차 중 작성이 어려운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측정보 면책조항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내용에 공정공시 대상정보(장래 사업·경영계획 등 기업의 중요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내용이 포함되도록 공시 문구와 해당 계획내용을 작성하면**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측정보의 면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6.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설정 방법

상장기업은 **명료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종·특성**을 고려하여 재무·비재무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 목표**(예 : 매출액, 영업이익, PBR, ROE 등)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성장 전략 및 방향성**(예: 설비투자(CAPEX) 확대, 해외사업 확장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 공시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할 경우는?

고배당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시행일 이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 공시한 경우,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재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서식에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배당금액, 배당성향 등을 기재하고, 첨부파일을 포함한 기존의 공시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다만, 기 공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서식의 **“주요 내용”**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첨부파일로 공시합니다.